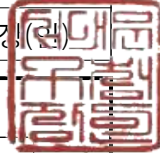


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

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	연희동 170-14번지 일대 제 1 호
번호부여일자	2025. 10. 02.
확인(인)	서대문구청장(인)



1. 소유자 인적사항

성명		생년월일	
주민등록상 현주소		전화번호	

※ 소유권 현황

권리 내역	토지	소재지 (공유여부)	면적(m ²)
		(계필지)	(계)
		()	
	건축물	소재지 (허가유무)	동수
		()	
		()	

*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,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

※ 주의사항

- ①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(동의를 받는 자)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
- ②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(동의를 받는 자)에게만 동의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
2. 구역개요

위치 (요청 구역)	연희동 170-14번지 일대	구역면적	51,893.72(m ²)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3. 동의내용

가.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(구역계)를 확인하였으며,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함

나.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·고지 받았습니다.

1. 아래의 동의여부 표기 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

※ ①와 ②은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여부를 표기하여야 함

의제사항		지필로 동의 기재 <①, ② 들 중 한 곳만 서명>
①추진위원회 구성	※동의 서명시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	동의
②조합직접설립 (추진위원회 구성 생략)	※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 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※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 할 경우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,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(충족)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※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	동의

2.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**관련 인·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** 동의를 철회하지
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

※ (예시) 입안 요청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,
입안 요청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

3.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제3항 및 제4항
에 따라 **동의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**하다는 사항

-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
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
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(이 경우 구청장이 철회
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)
-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구청장이 동의의 상대
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

상기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
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(지필로 동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)에
대해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: *지필 서명* (지장날인)

※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지필로 기재(서명)하고,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(인감, 기타 인장은 불인정)
서대문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첨부1. 신분증명서 사본 1부(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) ※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 등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(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) 3.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(공동소유일 경우). *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
------	---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,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,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>를 받고 있습니다.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(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)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]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: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주민 협의·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
*[문의전화] (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)
(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, 재정비촉진과, 주거환경개선과 등 市 소관부서)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비구역 지정까지 [단,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]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 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예)

[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]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주민 협의·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관계자
2.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3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주민 협의·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
*[문의전화] (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)
(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, 재정비촉진과, 주거환경개선과 등 市 소관부서)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비구역 지정까지 [단,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]
5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 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예)

성 명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

■ 소유권 현황

권리 내역	토 지	소 재 지 (공유여부)	면 적(m ²)
		(계 필지)	(계)
		()	
		()	
		()	
	건축물	소 재 지 (허가유무)	동 수
		()	
		()	
		()	

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(위임자)는 「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」 관련 신청구역의 범위(구역계)를 확인하였으며, _____을(를)
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소유물건	연번	성명 (자필서명)	주민등록번호 (앞 6자리)	전화번호	지장날인
대표소유자 (선임수락자)	-				
위임자 (동의자)	1				
	2				
	3				
	4				
	5				

※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,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